

전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319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319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소370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샘

담당변호사 박주교

변론 종결2020. 9. 10.

판결 선고2020. 11. 5.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소370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8. 11. 8. 22:00경 C가 운전하던 유한회사 D 소유의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황색 신호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H 웨딩홀 쪽에서 덕진구청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금암광장 쪽에서 H웨딩홀 쪽으로 직진하던 I 운전의 J 카렌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덕진구청 쪽에서 H웨딩홀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일시 정차 중이던 K 운전의 L 티구안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과 2차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유한회사 D는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고,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한 후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조합원을 대위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제3자에게 보상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사단법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5,122,500원(= 수리비 4,550,000원 + 대차비 572,500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를 청구하였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7. 22.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90%, 피고 차량 10%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7. 29. 원고에게 4,610,250원(= 5,122,500원 × 90%)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9. 7. 31. 4,610,2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역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50%, 피고 차량 50%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561,250원(= 5,122,500원 × 50%)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로 지급받은 2,049,000원(= 4,610,250원 - 2,561,25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차량신호등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제2호).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녹색 신호에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점, ③ 갑 제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후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할 당시에는 신호 위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차량이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다면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속히 직진하여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을 뿐 신호 위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차량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및 경위,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내부적인 책임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90%, 피고 차량 운전자가 10%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입은 손해액 5,122,500원 전액을 배상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를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4,610,250원(= 5,122,500원 × 90%)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재성

판사김범준

판사이슬아